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
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
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·제품·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
- 기술기여도

·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
·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
·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
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	연구개발성과물	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	국내외 지지체 협업 및 워크숍 개최	A-1	국내외 부지 등 지지체 협업 및 워크숍 개최	(주)한국가스기술공사	2,390	1,175	49.16%	기존 기술 개선	-
		B-1	신뢰도 기반 고장정비시스템 활용 방안 제시	(주)한국가스기술공사	2,390	1,175	49.16%	기존 기술 개선	-
B	국내외 버스차고지 형 충전소 Total 운영 체계화	B-2	국내외 실증 운영 매뉴얼 개발	(주)한국가스기술공사	2,381	1,170	49.14%	기존 기술 개선	-
		B-3	현지 수소 단가 산정	(주)한국가스기술공사	10	5	50.00%	기존 기술 개선	-

2021년 4 월 1 일

책임자 : 수석연구원 조영보
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 사장 고영태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 - 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 - 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·제품·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- 기술기여도
 -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 -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-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- 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	연구개발성과물	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C	국내 수소버스용 충전소 구축	C-1	국내 수소충전소 핵심장치 제작	광신기계공업(주)	1,989	1,490	74.91%	기존기술개선	-
		C-2	압축기 성능	광신기계공업(주)	1,328	995	74.92%	기존기술개선	-
D	국외 수소버스용 충전소 구축	D-1	해외 수소충전소 핵심장치 제작	광신기계공업(주)	1,992	1,491	74.85%	기존기술개선	-
		D-2	압축기 성능	광신기계공업(주)	1,328	994	74.85%	기존기술개선	-

2021 년 4 월 1 일

책임자 : 권 병 수
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 권 환 주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 - 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 - 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제품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- 기술기여도
 -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 -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-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- 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	연구개발성과물	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 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	한지환경 적용 수소냉동기술 개발	E-1	수소 냉각기	에너지(주)	2,221	1,664.5	75%	기존기술개선	-
	한지환경 적용 수소열교환 기술 개발	E-2	수소 PCHE	에너지(주)	553	414.5	74.95%	기존기술개선	-

2021년 4 월 1 일

책임자 : 이 재 원
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

장 진 숙

(인)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 - 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 - 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제품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- 기술기여도
 -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 -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 -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- 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	연구개발성과물	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 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	충전프로토콜 및 차고지형 수소충전시설 기존 실증 결과 분석	A-1	충전프로토콜 실증결과 분석	(주)미래기준연구소	100	75	75.00%	기존기술개선	-
		A-2	차고지형 수소충전프로토콜 모사 프로그램 개발	(주)미래기준연구소	100	75	75.00%	기존기술개선	-
	충전프로토콜 및 안전관리 기존 관련 표준화	A-3	국내표준화	(주)미래기준연구소	400	300	75.00%	기존기술개선	-

2021년 4 월 1 일

책임자 : 김 용 규 (인)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 채 충 근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별첨1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 - 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 - 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제품·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- 기술기여도
 -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 -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-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- 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연구개발성과물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	A-1 해외 현지 전력 패턴 분석	한국수력원자력	170	30	17.65%	신규기술개발	17.65%
	A-2 소규모 수소생산 시스템 설계	한국수력원자력	423.7	72.5	17.11%	신규기술개발	17.11%
	A-3 소규모 수소생산/저장 시스템 시운전	한국수력원자력	423.7	72.5	17.11%	신규기술개발	17.11%
	A-4 수소생산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보고서	한국수력원자력	423.7	72.5	17.11%	신규기술개발	17.11%
	A-5 수소생산 시스템 운전시나리오 개발 보고서	한국수력원자력	423.7	72.5	17.11%	신규기술개발	17.11%

2021년 4 월 1 일

책임자 : 김 준 호
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 한국수력원자력(주) 정재훈 (직인)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
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
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·제품·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
- 기술기여도

·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
·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
·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
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	연구개발성과물	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 비 (A)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	수소생산 시스템의 재생/그리 드 전력 연계계통 설계 및 EMS 실증 구축	A-1	수소 생산/저장/충전시 설에 재생/그리드 전력연계 설계	한국전력기술	410	205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		A-2	수소생산 시스템 운동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EMS 구축	한국전력기술	686	343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		A-3	EMS 시스템 운영관리 및 상태 평가	한국전력기술	412	206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		A-4	해외 수소생산 시스템 운동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EMS 구축	한국전력기술	546	273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
		A-5	해외 EMS 시스템 운영관리 및 상태 평가	한국전력기술	546	273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--	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	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

2021년 4 월 1 일

책임자 :

정 태 영
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

이 배 수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
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 - 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 - 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·제품·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- 기술기여도
 -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 -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^*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-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- * 「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연구개발성과물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율,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	A-1 PEM 수전해 시스템 개념 설계 및 Modeling	두산퓨얼셀(주)	1,200	600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	A-2 PEM 수전해 short stack 평가	두산퓨얼셀(주)	400	200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	A-3 PEM 수전해 시스템 모듈화 개발, 시제품 제작 및 평가	두산퓨얼셀(주)	1200	600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	A-4 해외 사이트 시제품 제작, 평가 및 운전 기술 고도화	두산퓨얼셀(주)	1200	600	50.00%	신규기술개발	50.00%

2021년 4월 9일

책임자 : 박종훈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

유수경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

연구개발성과별 기술기여도

사 업 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연구개발과제명	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		
주관연구개발기관	한국가스기술공사	연구책임자	조영보
총 연구개발기간	2021. 04. 01 ~ 2025. 12. 31		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- * (근거) 혁신법 제18조 제2항, 혁신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

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금액 = 매출액×기술기여도×기관유형별 비율

- 성과유형은 '신규 기술 개발'과 '기존 기술 개선'으로 구분하여 기술기여도 산정
- ① 신규 기술 개발 : 연구개발성과로 직접 도출된 신제품, 신기술, 신공법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
- ② 기존 기술 개선 : 기존 기술제품공법 등을 통한 매출이 존재하며,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개선 또는 개량된 기술
- 기술기여도
- ① 신규 기술 개발 = $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- ② 기존 기술 개선 = $\text{매출액증가율} \times \frac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}{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}}$
- 매출액 증가율 = $[(\text{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} -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) / \text{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}]$
- 기술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%인 경우에는 납부 제외
- 수익으로 인한 납부금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, 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

다른 금액을 상한으로 함

- 향후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음

* 「정부납부 경성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」 (미래부 성과평가과, 2015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핵심 연구개발성과물	연구개발성과물	성과 소유기관	총 연구개발비 (A)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B)	정부지원연구개 발비 비율 (C=B/A)	성과유형	기술기여도
A 해외 차고지형 수소충전소 용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	A-1 고온환경 대응용 알칼라인 수전해 개념설계	이엠솔루션	347	260	74.93%	신규기술개발	74.93%
	A-2 고온환경 대응용 알칼라인 20 Nm3/h 수전해 제작	이엠솔루션	533	400	75.00%	신규기술개발	75.00%
	A-3 모듈형 알칼라인 수전해 BOP, E-BOP, 스택 등 시스템 개발	이엠솔루션	2,000	1,500	75.00%	신규기술개발	75.00%
	A-4 200 Nm3/h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 모듈화 시스템	이엠솔루션	533	400	75.00%	신규기술개발	75.00%

		현지 설치, 시운전						
	A-5	200 Nm3/h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 모듈화 시스템 평가 / 운영 / 최적화	이엠솔루션	320	240	75.00%	신규기술개발	75.00%

2021년 4 월 1 일

책임자 : 문 상 등

연구기관장(성과소유기관장) : 강 삼 수 (직인)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